

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5-1775호

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 개발정비구역등의 해제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52호(2018.11.1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노원구 월계동 411-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
2.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, 의견서 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1. 13.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가.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2025. 11. 13. ~ 2025. 12. 15.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(노원구청 3층, ☎ 02-2116-3917)

다. 공람 내용

1) 정비구역등의 해제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해 제	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	노원구 석계로 95 (월계동 411-53번지)	-	증) 3,539.0	3,539.0	-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3,539.0	-	3,539.0	100.0	-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,047.0	2,047.0	-	-
	준주거지역	3,539.0	감) 2,047.0	1,492.0	100.0	

3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 경	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	노원구 월계동 380-1 일대	24,638.0	증) 1,492.0	26,130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환원

4) 해제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제1항제3호

-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해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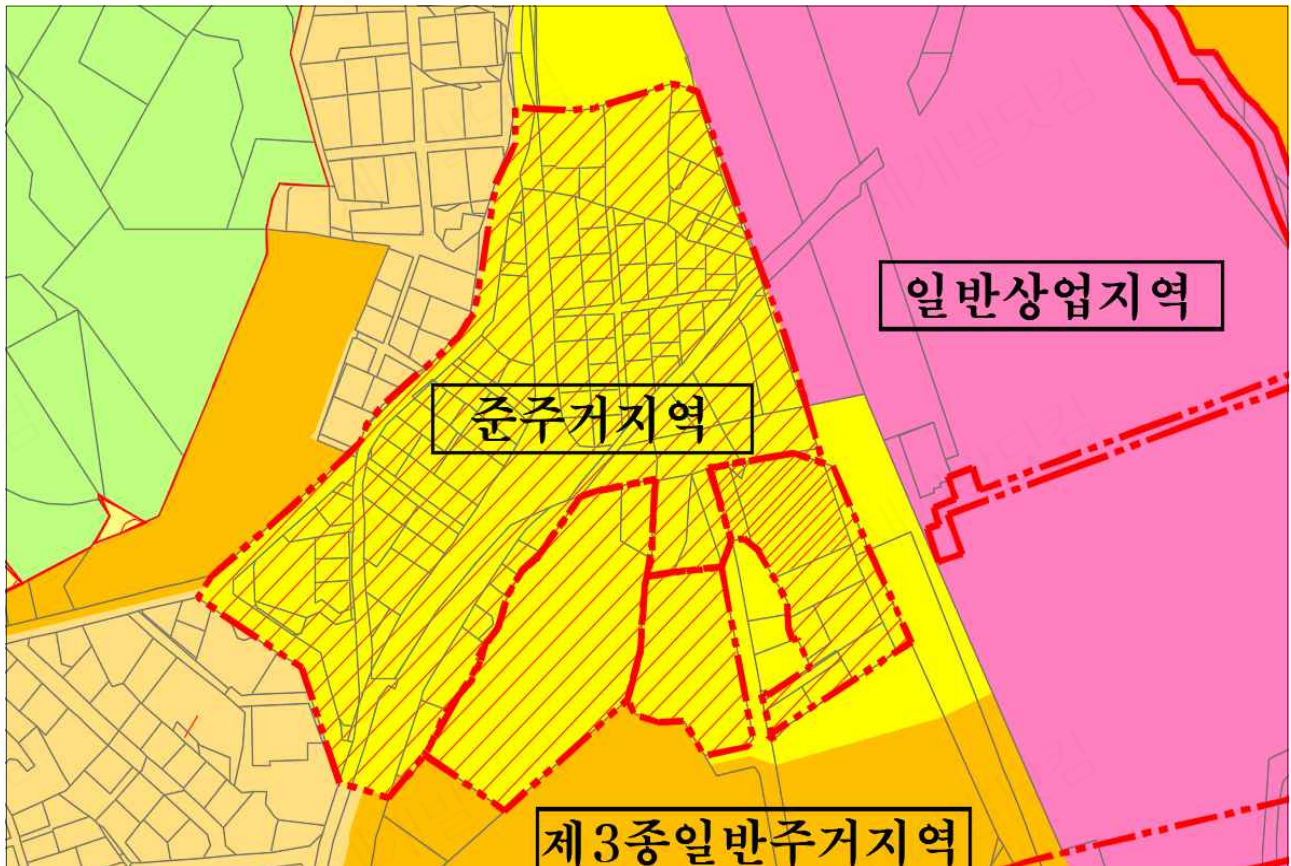
라. 주요내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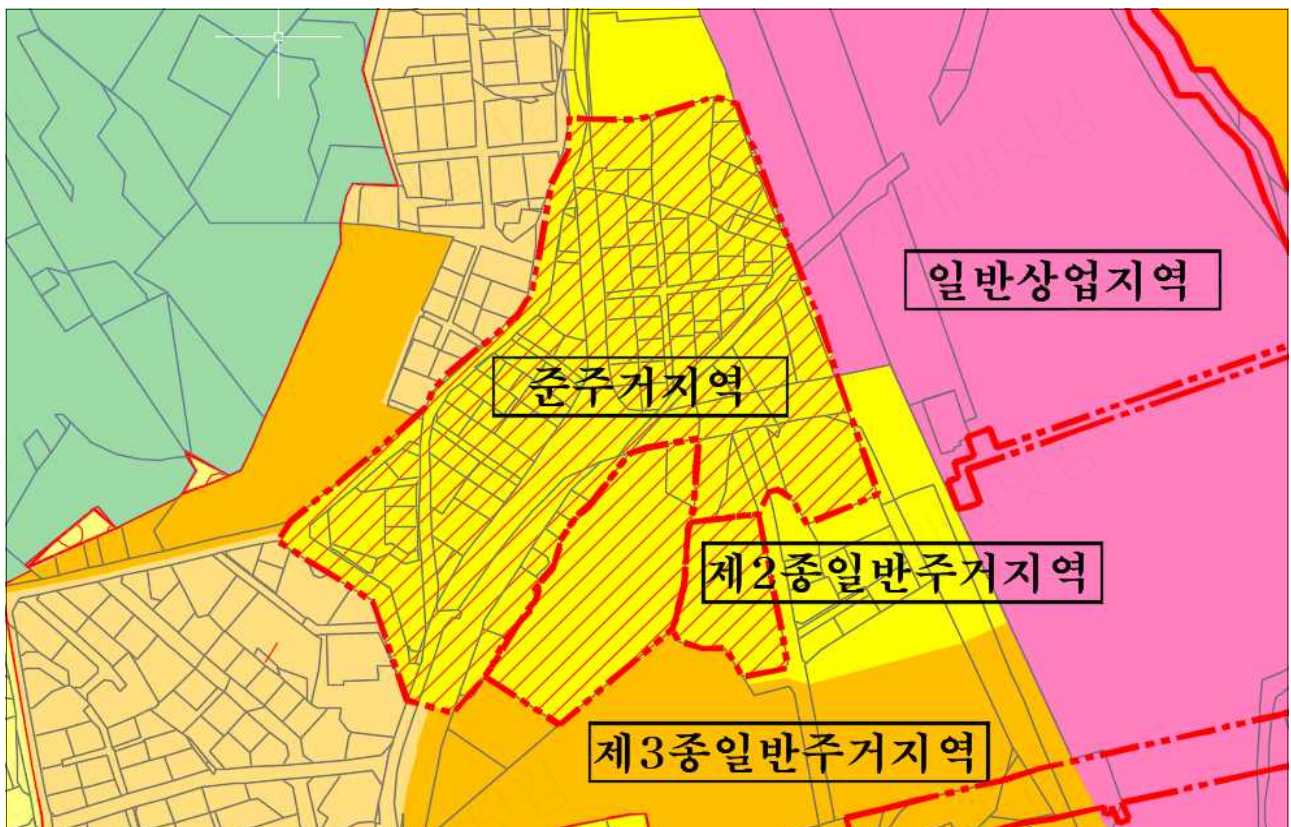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도(해제)



■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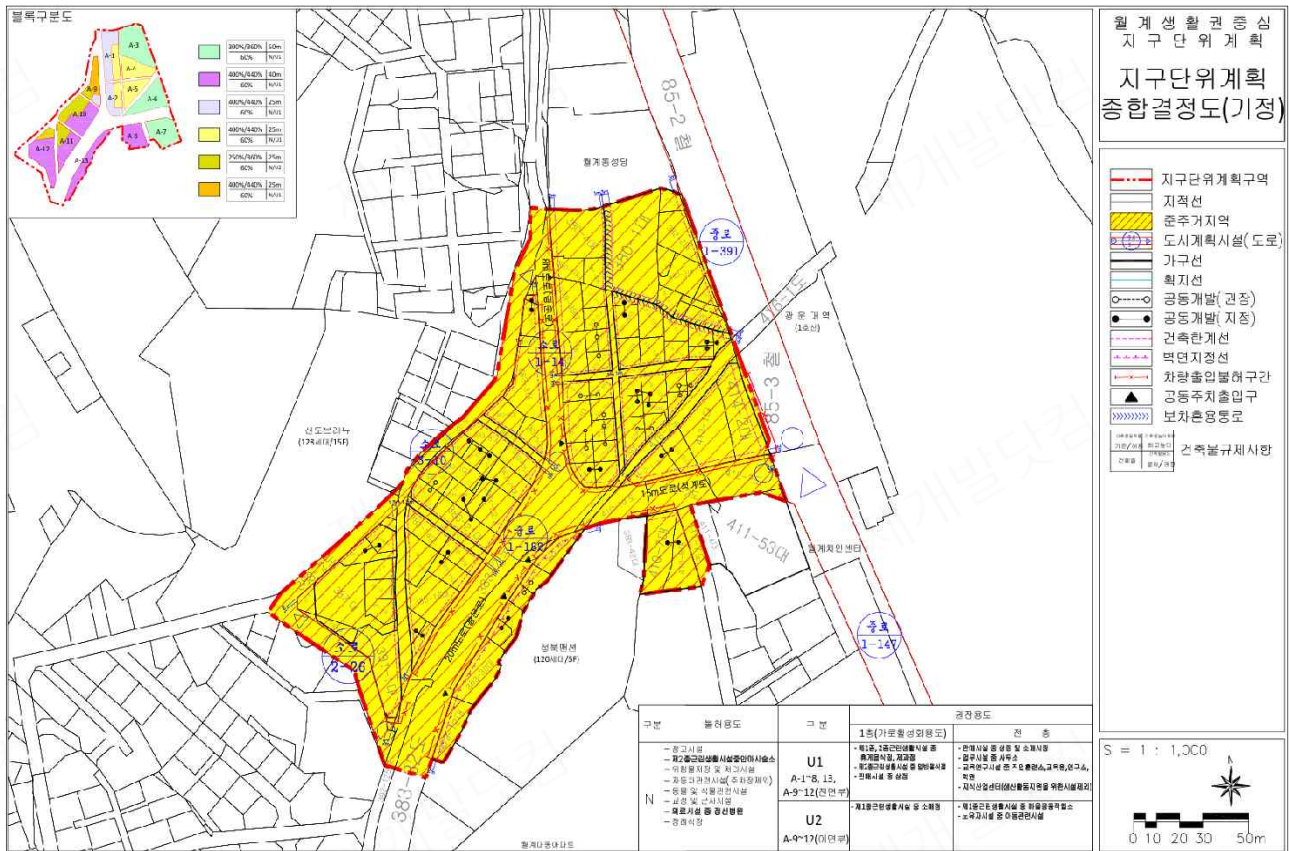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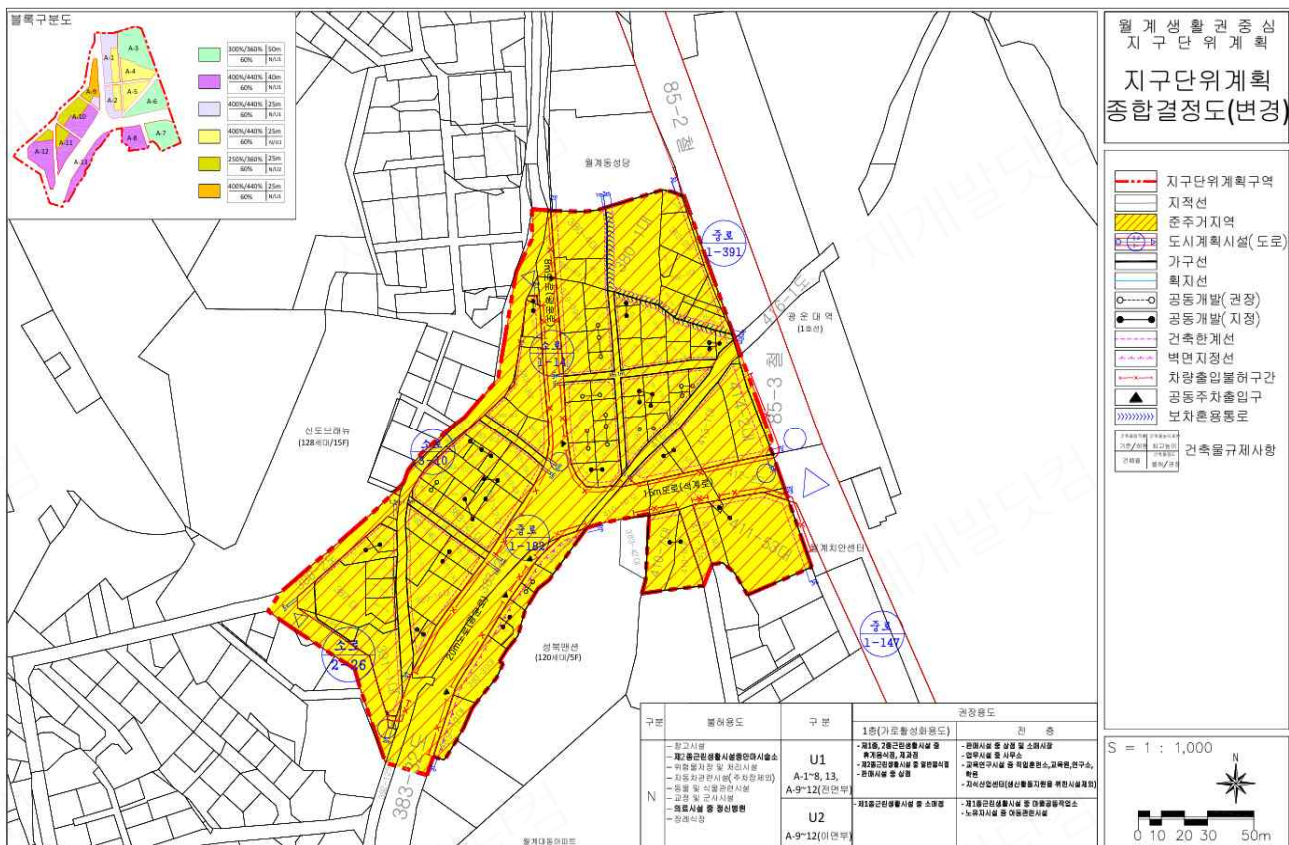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
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)



의견서

사 업 명	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	
의견 제출자	성명	생년월일
	소유 물건지	전화번호
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의견	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: 2025.11.13.~12.15.	
	의견서 제출장소 :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(노원구청 3층)	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서울시청(노원구청) 귀하